

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가단1496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31447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가단14961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경아, 이창화, 김철홍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이담, 이병희

변론종결 2023. 5. 25.

판결선고 2023. 6. 29.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 사이에 2022. 10.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는 2015. 12. 30. C에게 3,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20. 12. 30.,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894%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C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2019. 12. 16.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소320246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0. 7. “C는 원고에게 55,331,775원 및 그 중 29,699,450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의 아버지 망 E(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0. 2. 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망인의 자녀들인 F, G, 피고, H, C는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인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함)에 관하여 2022. 10. 11.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다음, 2010. 2.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2. 10.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질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보유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기준으로 합계 295,561,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
1	I은행	81,000,000원(2018. 5. 28. 연체발생)

		56,700,000원(2018. 5. 23. 연체발생)
2	J카드	303,000원(2018. 5. 2. 연체발생)
		287,000원(2018. 5. 2. 연체발생)
		287,000원(2018. 5. 2. 연체발생)
		287,000원(2018. 5. 2. 연체발생)
		227,000원(2018. 6. 4. 연체발생)
		75,000원(2018. 8. 3. 연체발생)
3	신용보증기금	66,433,000원(2018. 6. 15. 대지급 발생)
4	대구신용보증재단	49,381,000원(2018. 6. 21. 대지급 발생)
5	국세청(서대구세무서)	10,000,000원(2017. 12. 13. 공공정보 등재)
6	국세청(남대구세무서)	882,000원(2018. 6. 1. 공공정보 등재)
7	원고	원금 29,699,450원(이 사건 양수금)
합계		295,561,45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살피건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은 2005. 11. 18. C의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해 경북 영천시 K 토지(이하 'K토지'라 함)를 매도하여 받은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C는 망인이 변제하여 준 채무액만큼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수익에 의하여 L의 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4,610,816원이었으므로, C의 특별수익 1,000만 원과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계산한 C의

법정상속분은 C의 특별 수익액보다 적으므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다) 판단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K토지에 관하여 2005.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8. 5.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더 나아가 망인이 K토지의 매매대금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C의 사업자금으로 증여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의 기여분이 C의 법정 상속분보다 크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을제3호증 내지 을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그 전제(L의 특별수익의 존재, 피고의 기여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에
2022.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중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영천시 전 327㎡
2. 경상북도 영천시 대 552㎡
3. 경상북도 영천시 답 1,154㎡
4. 경상북도 영천시 전 645㎡
5. 경상북도 영천시 답 803㎡
6. 경상북도 영천시 답 774㎡
7. 경상북도 영천시 전 1,382㎡
8.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21.921㎡ 끝

